

# 종계 등록 문제점을 들어본다

〈편집부〉

축산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74년 8월 9일 공포된 이후 정부는 농수산부와 각도 양계담당자 및 대한양계 협회와의 충분한 토의를 마친후 1974 10.29일 농수산부 고시 2606호에 의해 종계심사기준을 고시 그동안 대부분의 종계업자들이 등록사업에 협조, 95% 이상의 등록을 마침으로서 양계업계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종계등록사업이 처음 실시됨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업자들의 왕병아리 및 세미부화로 인해 종계를 등록한 선의의 업자가 피해를 보는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불분명한 종란을 부화할 경우 6하원칙에 의해 고발해 줄 것을 각 지부(지회) 및 업계에 통고한 바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미등록 부화장의 불법부화 행위와 미등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부화행위등에 철저한 단속을 하여 위반 적발업체는 고발조처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월간양계에서는 종계등록 사업에 대한 몇가지 설문과 의견을 각 업계로부터 들어 보기로 했다. 한가지 부언해야 할 것은 본 설문은 3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게재했으며 설문발송대상은 본회 부화분과위원, 각지부(지회), 종계를 보유하지 않는 부화장, 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등에 발송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기일내에 도착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하며 뒤늦게 도착된 것에 한해서는 다음기회에 지면을 할애할 것을 약속하며 기 실시된 종계등록 사업이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와 좋은 의견을 계속 보내주시길 바란다. . . . . . 〈편집자〉

## 설문

1. 현재의 종계확인절차(종계장→시군→도→양계협회→시군→종계장)가 복잡하다고 생각치 않는가? 또 복잡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 되어야 될까?
2. 현재의 일부종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계의 일부만 종계를 등록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축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왕병아리, 세미등 계통이 불분명한 종란의 부화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4. 산란계의 웅추판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종계등록사업에 따른 위반업소의 처벌규정(벌칙조항)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치 않는가? 또 강화되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6. 국공립 기관에서 분양한 종계확인을 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7. 대한양계협회와 정부(농수산부)에 바라는 의견은?
8. 기타 종계등록사업에 따른 의견.

## 양계협회의 보다 헌신적 노력 필요



이 계 조

〈천호부화장 대표〉

- |                             |  |
|-----------------------------|--|
| 1) 종계확인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많은 종계가 아니므로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                        |
| 2) 등록 하지 않은                 | 3)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등록안된 종계로부터 어떤 병아리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아 |

인가?

- 4) 확인된 종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르겠다.
- 5) 현재의 처벌규정 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 6) 잘 모르겠다.
- 7) 종계확인 규정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받고 도장을 대주는 것 만으로 종계확인 행정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양계산업의 질적발전을 하는데는 격식이 아닌 수수료 이상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8) 입추 30일 이내에 종계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30일 이후 생기는 많은 폐사수수와 감염상태를 재확인 하지 않고 입추 30일을 기준한다면 참다운 종계확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변한 일이고, 종계확인 수수료도 가공 솟

자가 되고 만다. 종계로서 사용 되기 전에 150일령을 종계확인신청 기준일령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종란에 도장을 찍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본다. 종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고해서 정말 확인종계에서 나온 종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 계란에 도장이 찍혀있느냐, 없느냐도 종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불량종란에 도장만 찍히면 모두 합법적 종란이라고 인정한다면 불량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아직 많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불량추의 여부는 양계가가 판별해 낼 것이다.

## 종란날인 실행하기 어렵고 등록수수료 과중

최 민 용  
<한국바브록농장(주)대표>



- 1) 복잡하기는 하나 절차상 부득기 하다고 본다.
- 2) 보유종계는 모두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3) 계통이 불분명한 것은 부화시킬 수 없다.
- 4) 왕병아리용으로 판매된다고 보는데 왕병아리를 인정치 않는 이상 이는 옳치 않다.
- 5) 강화되어야 하며 고발에 따라 징세조치함이 가(可)하다고 본다.
- 6) 국공립 기관의 생산종계라 하더라도 양계협회의 능력검정에 출품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면 종계로서 확인함은 위법이다. 반드시 출품되어야 하고 이에서 그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7) 협회는 회원 대다수의 의견을 공정하게 정부에 건의하여야 하며 협회에 대한 대학교수의 참여도를 줄여 대학교수는 기술문제의 자문을 하는 입장에 서게 할 것이며 일부교수가 종계등록을 신청한 종계장에 가서 수사기관원과 같은 행세를 하였다는 바 이는 시정되어야 할 줄 안다. 농수산부는 무리없는 감독으로 등록사업을 관계적으로 성공시키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란다.
- 8) 종란에 하나, 하나 날인(捺印)하는 문제는 실지 시행하기 어려운 바 단 방법을 고려하여주기 바람에 종계등록수수료가 수당 15원은 과중하니 이를 5원정도로 개정하여 줄였으면 한다. 이것이 일부만의 등록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게하는 원인의 하나로 될 것이다. 등록사업을 하려면 100% 철저히 하고 그렇지 못하면 폐지함이 가하다고 본다.

## 미등록 종란의 불법부화, 양계업계 자멸초래

이 성 목  
 <대한양계협회 포천분회 총무>



- 1) 종계등록절차는 복잡하다고 생각치 않는다.
- 2) 절차가 조금 복잡해도 숫자는 분명하게 등록해야 할 것이다.
- 3)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세미나 왕병아리를 분양한다는 것은 양계업자의 큰 실패의 요인이며 유통과정의 큰 난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미등록 부화업자가 타종란을 입란하여 유추배부를 한다는 것도 강력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종계를 보유 한 부화장에서 중량미달 종란을 구입하여 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부화업자의 욕심에 불과하며 이는 양계업자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리사욕만을 위한 처사라고 본다. 또 유추가 부족할시에 위생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는 산란계에는 응추를 사용하여 양계업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세미나 왕병아리를 다량 생산하므로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협회나 농수산부가 통계를 작성하는데 힘이 들게 되며 정확성이 없는 통계가 되게 된다. 또 식량난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료수급계획과 종계수급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양계업자가

항상 불안속에 허덕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종계등록을 필한 등록업자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숫자가 적드라도 좋은 병아리를 육추하여 양계업계의 안정된 기반을 다져야 겠다고 생각한다.

4) —

5) 종계등록 규제는 더욱더 규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량미달 종란의 입란은 물론 어떠한 경우의 절차라도 타부화장으로 유출을 막아야 할 것 같다. 중량미달 종란이 시중 계란도매상을 통하여 시중단가보다 1~2원씩 더 주고 구입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부화업자나 종계업자가 입추한다는 것은 양계업자나 부화업자 자신의 자결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종계등록확인은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관리 부화장이 사적(私的)관계만 떠난다면 틀림없이 제 숫자를 등록할 것으로 본다. 만약 허위 숫자를 등록하여 세미나 왕병아리를 생산한다면 종계등록 숫자에 해당하는 부하기 외에는 봉하여 철저히 단속 규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6) —

7) 협회나 농수산부는 수시 점검하여 불량유추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세미나 왕병아리가 생산될 수 없도록 하여 이것을 생산하면 서로 죽는 길이라 생각하고 세미나 왕병아리라는 글자는 머리속에서 없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 위반업소 법적조치 취하고 양계지에 공개해야

김 광 옥  
 <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



- 1) 현재의 종계확인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종계 확인은 어디까지나 양계인 자체가 확인하도록 함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양계협회 지부나 분회에서 그 지역의 종계를 확인하여 본협회에서 일괄 관장함이 좋을 것 같다.
- 2) 병아리의 출하수수를 보아 철저히 색출 확인숫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3) 경제성이 없는 병아리니 만큼 절대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산란계의 응추는 사료효율도 적을뿐 아니라 일부 왕병아리 행상들이 암추로 팔아먹

- 는 사례가 있어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가 크니 응추는 감별직후 한마리도 출하시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 5) 마땅히 강화되어야 한다. 위반업체는 법적 조항의 처벌규정을 최대한으로 적용할뿐 아니라 양계잡지에 공개하여 양계인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을 일으키도록 함이 좋겠다.
  - 6) 종계숫자나 계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종계확인을 하는데는 곤란할 것으로 본다.
  - 7) 다음 4개항을 건의한다.
    - 가) 무질서한 종계수입을 지양할 것.
    - 나) 성능이 우수한 종계만 수입할 것.
    -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계는 능력검정을 철저히 시행한후 보급토록 할 것.
    - 라) 양계인이 살수 있도록 종계수급에 있어 최저선으로 확보토록 할 것.
  - 8) 없음.

## 현재의 벌칙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정 동 현  
 <춘천부화장 대표>



- 1) 복잡한 수속절차로 본다. 그렇게 아니하면 연결이 지어지질 않으니 도리없지 않을가.
- 2) 종계업자가 자가 가지고 있는 종계에 일부만을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없이 종란으로 사용한다면 본 법령

- 에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본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분양된 종계 원산지 증명에 게재된 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 이상 생존할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하겠음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종계 병아리가 도착되면 30일 이내에 종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120일령시에 신고하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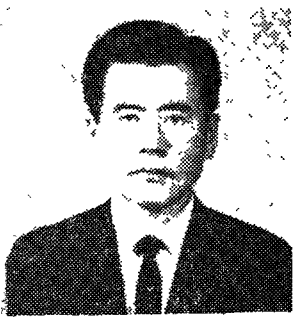
- 가) 산란계도 아니고 육계도 아닌 품종으로써 그 사용 목적에 부합시킬 수 없는 잡종이기 때문에.
- 나) 일반농가에서는 산란계로 속아서 사서 길러보고 알을 낳지 않으므로 폐기하는 예가 많다. 육계라면 60일 전후가 한계인데 산란계로 알고 100~150일이나 더 길러서 알을 아니 낳는다고 폐기하게 되어 120~150일 간에 사료소비는 헛된 소비가 된다. 또 일반농가에서 육계로 알고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60일에 2kg 이상되고 사료효율이 2.3내에 좋은 전용계를 사육하고 60일에 1k 600g내에으로써 사료효율이 3.0에 가까운 품종을 사용함은 사료에 허실을 초래한다.
- 다) 종계등록을 실시함으로써 그 통계수가 분명하여짐에 생산조절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만 씨미가 부화되면 음성적 생산으로써 생산조절이 불가능하다.
- 라) 씨미가 부화되면 그 병아리 값에 있어 외국계에 P.S씨 생산된 C.C보다 값에 있어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차액때문에 일반 농가는 값싼 씨미를 속아서 사게된다. 이러한 일반농가에 인식부족에서 외화를 소비하여 수입한 성능좋은 병아리가 아니 팔리게 되니 즉 외화에 낭비와 사료소비에 허실을 초래케 됨으로써 씨미부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 마) 씨미종란은 일반농가에서 유색종 C.C우에다 육계상을 교배만하면 손쉽게 얻어진다. 그래서 그 성능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종계로써 가장 소중한 혈통과 방역이 전연 말이 아니다. 이러한 병아리는 전염병을 전파하여서 그 피해는 상상외로 막심하다.
- 4) 산란계의 응추판매도 금지함이 마땅하다.

- 사료는 외화나 일반가정이나 일반농가에 인식부족으로써 사료에 허실을 생산치 안코서 사육하나 사료에 허실은 도리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5) 처벌 규정에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 처벌규정이 경하여서 처벌에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고 고위적인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 필자에 소견은 아래와 같다.
- 가) 씨미는 부화할시나 종계등록없이 부화할시에는 부화장에 폐소를 단행한다. (행정처분)
- 나) 종계등록없는 종란입란시는 무조건폐기 처분한다. (행정처분)
- 다) 위 가)항과 나)항에 행정처분에 순응치 않을시에는 1년이하에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 라) 씨미병아리에 종란을 생산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 씨미병아리로써 상행위를 한자 또는 상행위를 하고져 왕병아리로 사육하는자는 병아리를 몰수 폐기하고 6개월 이하에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 6)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종계도 외국에서 도입되고 사료도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음에 즉 병아리나 사료는 외화에 소비다. 어떤 병아리건 사료소비건간에 촌분에 허실을 막기에 태만할 수 있겠는가?
- 양적으로는 우리도 열강에 따라가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구태의연한바 적지 않다. 이 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당국에서 배려한 금번 개정된 축산법을 일층 강화하여서 위반하는 자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조리적 풍토가 일소 되기 바란다.

## 현재의 종계확인 절차 너무 복잡

박 도 현  
 <한협가금육종주식회사 대표>

종계등록 사업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히 해야될 필수적인 사업이며 그러므로서 정



상적인 부화업을 하는 업자에게 권익이 보호되며 양계산업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와같은 등록사업이 처음부터 100% 효과를 기대할 수 없

다 하더라도 일부 업계의 혼선과 잡음을 강력히 제재하여 선의의 업자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단속시초부터 일부 업자의 불법부화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이라도 유보상태로 된다면 금년뿐만 아니라 금년 이후에도 항상 단속에 잡음이 생기며 더 나아가 양계산업의 무질서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 현재의 종계확인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취급하는 기관은 꼭 관여하여야 되지만 절차를 다소 간소화 하는 방법으로 양계협회에 직접 종계확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협회의 확인증명을 받은 후 시군에서 도를 통하여 시군에서 종계확인 증명서를 교부받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 2) 신청당시 보유하고 있는 종계수수에 대하여는 무조건 전부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부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과잉생산의 여지가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 3) 등록이된 종계에서 생산되는 산란계 옹추에 대하여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옹추가 중대가축의 사료이용에도 되며 감별실습용 기타 실험용에도 이용이 된다. 또한 수익성이 나쁜 초생추를 사육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4)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취소는 물론 철저한 제재를 해야만 한다. 강화된 처벌규정보다도 강력한 단속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5) —

- 6) 대한양계협회에나 정부당국에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의 법령을 철저히 운영 집행하여 위반업소를 단속하여 주길 바라고 싶다. 법은 법대로 업계의 무질서한 상태는 그대로 각각 방치된다면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염려가 된다.

또한 행정당국에서는 닭의 수수로 조절하는데 여하한 방침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양계분야를 발전시키고 적정수수를, 사육케 한다는 것은 종계의 수수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종계수급계획은 양계산업의 호경기 기준으로 하여 점차 수요증가 추세에 비추어 책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1973년 이래 경제불황에 편승하여 양계분야에도 심각한 불황과 소비위축이 가중되어 수요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태까지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불황속에서 수요량이 충당되는 종계로 조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계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도착순계제>

◆ 알 림 ◆

지난 3월 25일 열린 대한양계협회 종계심의 위원회에서는 그간 순계(P.L), 종계(P.S) 등으로 종계확인 신청되던 국립 종축장 및 각도 종축장에서 생산되던 “코로나 알로드아이랜드 레드”에 대하여는 순계 형태로 일반농가에서 사육될 경우 표잡종에 비하여 그 능력이 떨어질므로 앞으로는 시험성적결과 능력이 우수한 교잡 또는 교배종으로 이용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